

담당자	산업심의관	경제조정관	국무조정실장	국무총리
	우종상	맹점주	기획재정부 장관 	
협 조	총괄조정관 기획심의관	기획 20		

보고일시 : 1999. 9. 7. (화)

보고자 : 산업심의관

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 개정(안)

(국무총리지시 1999-22호)

(1999. 9. 13.)

'99. 9. 8 (수) 10 : 00시에 개최예정인
 제4회 국가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에
 상정할 안건인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
 개정(안)을 별첨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.

별첨 :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 1부.

【3號 案件】

公共機關 에너지節約 國務總理 指針改正(案)

1. 改正事由

- '98. 7월 지침 개정 이후, '98 · '99년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과정에서 적출된 제도개선 사항 등 미비점 보완

2. 主要改正內容

① 에너지節約目標를 合理的으로 調整

< 現行 > : “'97년도 燃料·電力使用量을 基準으로 2000년까지 10% 節減推進”

< 改正 >

- (1) 2000년까지 최대 10% 절감을 목표로 하되, 기관별로 매년 절감목표를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추진
- (2) 에너지사용량 기준의 기관별 에너지원단위지표 병행사용

② 中央行政機關, 市·道 및 政府投資機關 등의 所屬·傘下機關에 대한 에너지節約 推進 點檢(年1回) 義務化(新設)

③ 모든 公共機關의 에너지節約事業妥當性 檢討 義務化(改正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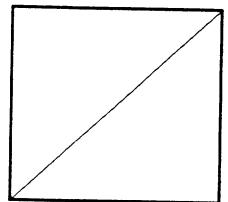
< 現行 > : 연면적 1만m²이상 또는 연간 전력사용량 400만kW이상인 공공건물에 우선 적용

④ 모든 公共機關의 新築時, 高效率에너지 機資材로 認證된 14개全製品 使用을 義務化(改正)

< 現行 > : 26mm 32W 형광램프 등 전용안전기등 2개만 의무화

⑤ 公共機關에 節電型 事務用機構 使用 義務化(신설)

⑥ 에너지節約 推進實績 報告回數를 現行 “년1회(매년 2월말)”에서 “년2회(매년 2월말, 7월말)”로 變更 (改正)



議案番號	第 3 號	議 決 事 項
議 決 年 月 日	1999. 9. 8 (第 4 回)	

公共機關 에너지節約 推進指針 改正(案)

(국무총리지시 1999-22호)
(1999.9.13.)

國家에너지節約推進委員會

提出者	國家에너지節約推進委員會 委員 鄭海濬 (國務調整室長)
提出年月日	1999. 9. 8

『公共機關 에너지節約 推進指針』改正(案) 要約

1. 改正事由

- '98. 7월 「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」 개정 이후, '98·'99년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과정에서 적출된 제도개선 사항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,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대내외적 경제여건 변동을 반영한 에너지 절약 시책을 강화하고자 함

2. 主要改正內容

□ 에너지節減目標 設定의 合理化(改正)

- (현행) “‘97년도 연료·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2000년까지 10% 절감추진”을
 - “‘97년도 연료·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2000년까지 최대 10%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되, 기관별로 매년 절감목표를 신축적으로 설정·추진”으로 개정
 - 절감목표 설정시, ‘97년도 에너지 사용량 기준 이외에 기관·소속 건물별 에너지원단위(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) 지표를 병행사용토록 함

□ 所屬・傘下機關의 에너지節約 推進 點檢 義務化(新設)

- 중앙행정기관, 시·도 및 정부투자기관 등은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소속·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사항을 년 1회 이상 지도·점검 의무화

□ 公共機關 에너지節約事業 妥當性 檢討 義務化(改正)

- (현행) “연면적 1만m² 이상 또는 연간 전력 사용량이 400만kW 이상인 공공건물에 대하여 ESCO사업 우선 적용”을
 - “중앙행정기관, 시·도 및 정부투자기관 등은 본청 및 소속·산하기관, 사업소 등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전문기업(ESCO)을 통한 에너지절약사업 타당성 검토 의무화 및 추진계획 수립·시행”으로 개정
- *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자체예산 또는 다수기관 합동으로 추진

□ 公共建物의 高效率에너지機資材 使用 義務化(改正)

- (현행) 26~32W 형광램프 및 전용안정기 등 2개 품목에서
 - “모든 공공건물 신축(증·개축 포함)시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「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권고에 관한 규정」(산업자원부고시)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 사용을 의무화”

- * 고효율인증기자재(14개) : 26~32W 형광램프 및 전용안정기, 전구식형광등기구, 형광램프용 고조도반사갓,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, 고효율 유도전동기, 폐열회수용 환기장치, 고기밀성 단열창호, 산업·건물용 가스보일러, 가정용 가스보일러, 고효율펌프, 원심식 냉동기, 모니터 절전기, 무정전 전원장치

□ 公共機關에 節電型 事務用機器 使用 義務化(新設)

- 컴퓨터, 복사기, 팩시밀리 등 대기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기기는 「절전형 사무용기기 및 가정용 가전제품의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」(산업자원부고시)에 따라 인증된 절전형 제품의 사용을 의무화

□ 에너지節約 推進實績 報告回數 變更(改正)

- (현행) “년1회(매년 2월 말)”에서 “년2회(매년 2월 말, 7월 말)”로 변경
 - 상반기 실적 분석·평가 결과를 하반기에 재점검하여 에너지절약 추진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

별첨 : 기관별 주요 조치사항

[별첨]

기관별 주요 조치사항

기 관	주 요 조 치 사 항
공 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별 에너지절약추진체계 구축 및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 설정 · 관리 ○ 자체 에너지절약추진계획 수립 · 시행 및 평가 ○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 ○ 소속 · 산하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사항 지도 · 감독 ○ 에너지절약 사업 타당성 검토 의무화 ○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의무화 ○ 절전형 사무용기기 사용 의무화 ○ 업무용차량의 경차구매 유도 및 경차의 10부제 면제 ○ 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○ 에너지절약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 · 시책의 정비
국무총리실 (국무조정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에너지절약정책총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공공기관 에너지절약추진지침」 시달 및 추진상황 점검
기획예산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투자기관 · 단체 경영평가 지침에 에너지절약 추진성과 반영기준 상향조정 ○ 예산지침 작성시 업무용차량 경차구입을 유도 ○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한 예산 우선 지원
재정경제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세제 개편시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소비구조 합리화를 위한 시책 강화
금융감독 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차보급 확대를 위한 보험료 경감지원
행정자치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부청사에 대한 건물에너지절약 추진계획 수립 · 시행 ○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계획 수립시, 에너지절약 관련내용 반영 독려 - 반상회보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 홍보 ○ 에너지절약관련 법령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사항 확인 및 독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추진 권고

기 관	주 요 조 치 사 항
산업자원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법령·제도 정비 ○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정책 수립·시행·점검·평가·보고 ○ 에너지절약 홍보강화를 위한 민간기관·단체와의 협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에너지절약 홍보·교육 지원(수범사례집 발간 배부) ○ 성과배분계약제도 등 에너지절약시책 개발·보급 ○ 고효율기자재 보급확대 방안 강구 ○ 공공기관 에너지진단, 에너지사용계획협의
건설교통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제, 차고지 증명제등 차량운행 제한조치 추진시, 경차에 대하여 완화적용 ○ 에너지절약관련 법령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 사항 협조요청 ○ 경차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·제도 정비의 지속적 추진
조 달 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효율기기 구매·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
교 육 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급 학교의 고효율기기 자체 추진 ○ 교원 교육시 에너지절약내용 반영 ○ 초·중·고 교과서에 에너지절약내용 반영
기술품질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효율기기의 한국산업규격 제정 확대
지방자치단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에너지절약관련 조례 제·개정 ○ 버스 전용차선제의 확대,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확충 등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 추진 ○ 공공기관 및 지하철역 주변에 자전거 주차대 확대설치 ○ 공영주차장에 대한 10부제 실시 및 경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등 추진 ○ 경차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○ 업무용차량 구입시 경차 우선 구매 ○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 참여자에 대한 지원책마련

국무총리지시 1999 - 호

公共機關 에너지 節約 推進指針 改正(案)

1999. 9. 8.

國務調整室

1. 目 的

-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 향상에 솔선수범함으로써,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의식을 확산시켜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

2. 基本方向

-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통한 정부예산 절감
 - 에너지 관련, 정부 예산 부담 최소화
 -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·관리하여 절약효과 제고
 - 기관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및 에너지절약 전담조직 운영의 활성화
- 공공기관부터 에너지절약을 선도하여 범 국가적 절약분위기 제고
 - 공공기관의 정책수행시 에너지절약 시책을 충분히 반영
 -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절전형 사무용기기 사용 의무화
 -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수범사례 적극 홍보

3. 推進體系

- 국무조정실 :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 총괄
 - 추진지침 시달 및 추진상황 점검
- 산업자원부 :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시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·보고
 -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시책 수립·시행
 - 각급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상황 평가 및 보고
-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(시·도)
 - 소속·산하기관을 포함한 에너지절약추진계획 수립·시행
 - 절약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제도(조례 및 규정) 정비
 - 소속·산하기관 등의 에너지절약 추진사항 총괄조정 및 감독

4. 對象機關

-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(교육기관 포함)
- 지방자치단체(시·도) 및 소속기관, 지방공기업
- 정부투자·출연기관 및 산하단체

5. 推進內容

공통부문

가. 에너지절약 추진체계 구축

- 각 기관별 「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」 운영의 활성화
 -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·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
 - 자체 에너지절약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실시
 - * 여러 부처가 입주하고 있는 합동청사의 경우, 청사관리기관 주관으로 각 입주기관의 총무과장을 위원으로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
- 에너지절약 담당부서 지정·운영
 -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절약 담당부서를 지정·운영(담당 부서는 총무과 또는 기관별 실정을 감안하여 지정)

나. 연도별 에너지절감목표 설정·관리

- '97년도 연료·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2000년까지 최대 10%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되, 기관별로 매년 절감목표를 신축적으로 설정·추진
 - 절감목표 설정시, '97년도 에너지 사용량 기준 이외에 기관·소속 건물별 에너지원단위(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) 지표 병행사용
 - 시설의 신축과 증·개축, 연구시험기자재와 도로조명시설 등의 증가분을 반영한 매년도 절감목표를 기관별로 신축적으로 설정·추진

다. 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시책정비

- 에너지절약 관련 각종 제도 및 시책을 지속적으로 정비

* 기관별 주요 조치사항 : (별표 1)

라. 소속·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사항 지도·감독

- 중앙행정기관, 시·도 및 정부투자기관 등은 소속·산하기관의 에너지 절약 추진사항에 대해 총괄조정 및 지도·감독 의무화

-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년1회 이상 지도·점검 의무화
- 소속·산하 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 분석·평가 및 개선조치
- 에너지절약 관련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

건물부문

가. 에너지절약전문기업(ESCO)을 통한 에너지절약사업 타당성 검토 의무화

- 중앙행정기관, 시·도, 정부투자기관 등은 본청 및 소속·산하기관, 사업소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(ESCO)을 통한 에너지절약사업의 타당성 검토 의무화 및 추진계획 수립·시행

- 타당성 검토 결과,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된 기관은 에너지절약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고, 사업성이 없는 기관은 자체예산에 반영하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단계적 개체
- 건물 규모가 작아 경제성이 낮은 단위 기관들은 여러 기관들을 통합하여 종합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

나. 공공건물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의무화

- 모든 공공건물 신축(증·개축 포함)시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「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권고에 관한 규정」(산업자원부고시)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 사용 의무화
- 대상 고효율기기 : 26~32W 형광램프 및 전용안정기, 전구식 형광등 기구, 형광램프용 고조도 반사갓, 조도 자동조절 조명기구, 고효율 유도전동기, 폐열회수용 환기장치, 고기밀성 단열창호, 산업·건물용 가스보일러, 가정용 가스보일러, 고효율 펌프, 원심식 냉동기, 모니터 절전기, 무정전 전원장치 등

다. 에너지관리진단의 내실화

- 중앙집중방식의 냉·난방을 실시하는 대형 공공건물은 필요한 경우,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에너지관리용역진단을 의뢰하여 에너지 순실 요인과 개선방안을 발굴
- 에너지관리공단은 공공기관에서 에너지진단을 신청할 경우, 우선적으로 진단실시
- 진단결과 제시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사업 또는 자체 예산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개선추진

라. 전력사용기기 및 냉난방설비의 합리적 이용

- 빙축열·가스흡수식 냉방기 설치 또는 지역냉방 도입을 통한 전력 절감 도모
-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설치 등을 통한 전력피크 부하 감소
- 공공건물의 적정 냉·난방온도 관리
 - 난방온도 : 18~20°C, 냉방온도 : 26~28°C

○ 모든 공공기관의 절전형 사무용기기 사용 의무화

- 컴퓨터, 복사기, 팩시밀리 등 대기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, 「절전형사무용기기 및 가정용 가전제품의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」(산업자원부고시)에 따라,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의무화

○ 엘리베이터 격증운행 등 합리적 운영

- 3층 이하 운행금지(다만, 환자·장애인·화물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)
- 출퇴근 시간 및 중식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는 승강기 제한운행
- 10층 이상 건물은 일정층 이상·이하로 구분하여 승강기 운행 등

수 송 부 문

가. 경차보급 활성화 촉진

○ 경차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·제도정비의 지속 추진

- 통행료 감면범위 확대(고속도로 → 전국 유료도로) 및 책임·종합보험료 인하 조정유도
- 10부제, 차고지 증명제 등 차량운행억제 조치 완화

○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경차 보급활성화를 위해 경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 추진

- 관내 민영주차장에도 경차 지원 권고

○ 각 공공기관 업무용차량 신규 구입시, 기관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최대 50%까지 경차 구매를 유도

-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반영
- 소속·산하기관에 대해 경차 우선구매 권고

나. 승용차 운행 자체방안 강구

- 기관별 특성에 맞는 승용차 운행 자체방안을 강구·시행
 - 부제운행(10부제, 5부제, 주1회 휴차제 등)
 - 승용차 함께타기 활성화
 - 통근버스 확대운영, 인근 기관과 통근버스 카풀제 운영 등 추진
- 부제운행, 승용차 함께타기 등 승용차운행자체 기업 및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
 - 교통유발부담금 경감,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

다. 자전거타기 활성화 및 대중교통이용 촉진

- 공공기관 및 지하철역 주변, 공영주차장 등에 자전거 주차시설 확대 설치
 - 지역 특성에 맞게 검토 추진
- 각급 도로의 신설·확장·재정비시 자전거도로 확보

교육·홍보부문

가. 각종 교육과정 등에 에너지 분야 포함

- 각종 공무원 교육시 에너지절약 관련 교과목의 반영
- 구내방송 등을 활용한 에너지절약 실천교육 강화
- 민방위교육시 에너지절약관련 교육 적극 실시

나. 에너지절약 홍보의 강화

- 각 기관별 홍보·출판물에 에너지절약 내용 포함
- 반상회보에 에너지절약 효과 및 방법에 대한 홍보자료 게재
- 환경·교통 등 정부시책 홍보시 에너지절약 내용 연계 추진

6. 행정사항

가. 각 기관별 「에너지절약추진계획」 수립·시행 및 평가

- 각 공공기관은 이 지침을 참고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자체 에너지절약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
 - 다만, 정부중앙·과천·대전청사에 입주하고 있는 기관의 건물 부문·승용차운행 자제방안 등은 행정자치부가 종합적으로 수립·시행하고, 필요시 입주기관 총무부서를 통한 협조체계 구축
-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연도별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실적을 평가하고, 미비점을 개선·보완
 - 매년 반기별로 에너지 소비량 및 절약실적을 자체 점검 및 분석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차기 에너지절약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추진

나.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(보고)

- 각 중앙행정기관, 시·도지사 및 정부투자기관 등은 자체 에너지 절약추진계획 및 실적(평가)을 매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(보고)
 - 제출 대상기관 : 중앙행정기관, 시·도 및 정부투자기관 등
 - 제출시기
 - ① 당해연도 에너지절약추진계획은 당해연도 1월 말까지, 전년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(평가)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
 - ② 상반기 에너지절약추진실적 : 매년도 7월 말일까지
 - 제출서식 : (별표 2)
- 소속·산하기관 등의 에너지절약추진계획 및 실적(평가)은 각 중앙 행정기관 및 시·도지사, 정부투자기관장이 종합관리

다.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의 점검·평가 및 수범사례 발굴 확산

- 국무조정실은 산업자원부 등 유관기관과 협동 점검반을 편성, 년 1회이상 점검 실시
 - 점검대상 : 각 중앙행정기관, 시·도 및 정부투자기관 등
- 산업자원부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, 시·도 및 정부투자기관의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을 종합평가
 - 평가결과는 「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」에 보고
 - 매년 평가결과와 수범사례집을 발간하여 각 공공기관에 배부

라. 기타

-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국무총리지시 제1999-18호('98.7.2)는 폐지

[별표 1]

기관별 주요 조치사항

기 관	주 요 조 치 사 항
공 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별 에너지절약추진체계 구축 및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 설정 · 관리 ○ 자체 에너지절약추진계획 수립 · 시행 및 평가 ○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 ○ 소속 · 산하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사항 지도 · 감독 ○ 에너지절약 사업 타당성 검토 의무화 ○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의무화 ○ 절전형 사무용기기 사용 의무화 ○ 업무용차량의 경차구매 유도 및 경차의 10부제 면제 ○ 승용차 운행 자체방안 강구 ○ 에너지절약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 · 시책의 정비
국무총리실 (국무조정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에너지절약정책총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공공기관 에너지절약추진지침」 시달 및 추진상황 점검
기획 예산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투자기관 · 단체 경영평가 지침에 에너지절약 추진성과 반영기준 상향조정 ○ 예산지침 작성시 업무용차량 경차구입을 유도 ○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한 예산 우선 지원
재정경제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세제 개편시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소비구조 합리화를 위한 시책 강화
금융감독 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차보급 확대를 위한 보험료 경감지원
행정자치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부청사에 대한 건물에너지절약 추진계획 수립 · 시행 ○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계획 수립시, 에너지절약 관련내용 반영 독려 - 반상회보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 홍보 ○ 에너지절약관련 법령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사항 확인 및 독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추진 권고

기 관	주 요 조 치 사 항
산업자원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법령·제도 정비 ○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정책 수립·시행·점검·평가·보고 ○ 에너지절약 홍보강화를 위한 민간기관·단체와의 협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에너지절약 홍보·교육 지원(수범사례집 발간 배부) ○ 성과배분계약제도 등 에너지절약시책 개발·보급 ○ 고효율기자재 보급확대 방안 강구 ○ 공공기관 에너지진단, 에너지사용계획협의
건설교통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제, 차고지 증명제등 차량운행 제한조치 추진시, 경차에 대하여 완화적용 ○ 에너지절약관련 법령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 사항 협조요청 ○ 경차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·제도 정비의 지속적 추진
조 달 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효율기기 구매·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
교 육 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급 학교의 고효율기기 개체 추진 ○ 교원 교육시 에너지절약내용 반영 ○ 초·중·고 교과서에 에너지절약내용 반영
기술품질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효율기기의 한국산업규격 제정 확대
지방자치단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에너지절약관련 조례 제·개정 ○ 버스 전용차선제의 확대,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확충 등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 추진 ○ 공공기관 및 지하철역 주변에 자전거 주차대 확대설치 ○ 공영주차장에 대한 10부제 실시 및 경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등 추진 ○ 경차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○ 업무용차량 구입시 경차 우선 구매 ○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 참여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

[별표 2]

'00년도(상반기)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및 '00년도(하반기) 계획

I. 일반현황

○ 건물현황

구 분	연면적(m ²)	냉·난방면적(m ²)	증감(m ²)		증감내용
			건물	냉·난방	
전년도					
금년도					※ 증감내용을 상세히 기록

II. 에너지절감 목표 및 사용실적

○ 에너지절감 실적 및 목표('97년 사용량 기준)

구 분	기준년도 ('97)			연도별 절감목표											
				계		'98		'99		2000					
	총 계	상 반 기	하 반 기	누 계	상 반 기	하 반 기	총 계	상 반 기	하 반 기	총 계	상 반 기	하 반 기	총 계	상 반 기	하 반 기
에너지사용량 합계(kg/년)															
에너지원단위 합계(kg/m ²)															
전년대비에너지 사용절감량(kg/년)															
전년대비에너지원 단위절감량(kg/m ²)															
기준년도대비 절감율(%)															
기준년도대비 원단위절감율(%)															

- *주) :
- 에너지사용량(kg/년)합계 = 연료사용량(kg/년)+전력사용량(kWh/년)×0.25
 - 연료원단위(kg/m²) = 연료사용량(kg/년)÷당해년도 난방면적(m²)
 - 전력원단위(kWh/m²) = 전력사용량(kWh/년)÷당해년도 연면적(m²)
 - 에너지원단위(kg/m²)합계 = 연료원단위(kg/m²)+전력원단위(kWh/m²)×0.25

○ 에너지사용실적

구 분	기준년도 ('97)			전년도 사용실적						금년도 사용 실적					
				사용실적			증감율(%)			사용실적			증감율(%)		
	합계	상반기	하반기	합계	상반기	하반기	합계	상반기	하반기	합계	상반기	하반기	합계	상반기	하반기
연료사용량															
연료원단위															
연료사용비용															
전력사용량															
전력원단위															
전력사용비용															
에너지사용량															
합계															
에너지원단위															
합계															
에너지사용비															
용합계															

* 비용단위(천원)

III. '00년도 (상반기) 에너지절약 추진실적

1. 주요 추진시책

- 각 부문별로 작성(공통부문, 건물부문, 수송부문 등)
 - 추진사항별로 구체적으로 작성
 - 에너지절약 수법사례 제시
 - 에너지절약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, 성과배분계약의 추진, 주요 에너지사용기기의 고효율기기로의 개체 등(관련서류 사본 첨부)

2. 추진실적의 평가

- 계획대비 추진실적의 분석(잘된 점, 미흡한 점)
-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또는 제약요인
- 향후 개선방향

IV. '00년도 (하반기) 에너지절약 추진계획

1. 추진목표

- 기관별 특성을 감안, 중점 추진사항을 제시
 - 에너지절약목표 달성방법 등 포함, 구체적으로 작성

2. 세부 추진계획

- 「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」에 의거, 부문별로 작성